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0349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 2. 28.부터, 피고 C는 2023.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와 D은 2022. 7. 20. 아래와 같은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채권자 원고

2 채무자 E회사 D

3. 채권금액 3억 6,000만 원

4. 합의금액 2억 8,000만 원

5. 변제일자 2022. 7. 18. 2,000만 원 입금 완료

2022. 7. 29. 4,000만 원

2022. 8. 31. 4,000만 원

매월 말일 2,000만 원씩 변제한다

(매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일로 한다)

6. 내용

1) 채무자는 합의금액을 변제일자까지 변제계좌로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불이행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며, 계약위반으로 2022. 7. 18.에 입금한 2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되며, 채권금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즉시 법적 진행과 동시에 법적 제재 조치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채무자가 부담하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합의서가 작성되고 입금이 되면 모든 법적 조치는 중단 또는 해제한다.

3) 합의금액이 모두 입금이 완료되면 채무는 소멸되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9605 사건번호의 판결문도 효력이 소멸된다.

4) 2023년 1월말까지 2억 5,000만 원 입금이 완료되면, 합의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

7. 변제계좌(생략)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변제합의에 의해 피고들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원고가 2023. 6. 23. 변론기일에서 감축(일부 소취하)하였다], 피고들도 이에 다투지 않았다.

한편 위 변론기일에서 피고 B는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며, 원금에 충당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200만 원(= 2억 5,000만 원 -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23. 2. 28.부터, 피고 C는 2023.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변제합의에서 정한 기일까지 위 5~6.항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나, 2023. 6. 23.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사정 등 이 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2억 5,000만 원으로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